

삼국·통일신라시대 부산지역의 사회

- 수취체제와 그 내부의 民을 중심으로 -

김 기 섭

(부산대학교 교수)

차 례

I. 머리말

II. 신라 중고기 이전의

수취체제와 民

III. 신라 중고기 수취체제와 民

1. 수취체제와 수취방식

2. 부산지역의 수취체제와 民

IV. 신라 중대 수취체제와 民

1. 수취체제와 수취방식

2. 부산지역의 수취체제와 民

V. 맺음말

I. 머리말

삼국시기에 신라는 고대국가 체제를 지향하면서 국가적 발전을 도모해 왔으며, 이를 위해서 여러 면에서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였다. 특히 수취체제의 정비과정은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고, 이는 수취의 기반이었던 일반농민층의 생산적 기반이 갖추어지면서 公民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통일 이후 신라는 새로운 중대 사회를 열어가면서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시도하였다. 신라는 중앙집권적인 지배체제를 구현하면서 서서히 성장해가고 있던 신라 촌락을 기반으로 하여 신라 중고기와는 다른 수취체제의 틀을 마련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의 정치체제 및 기구가 정비되고 아울러 각 지역에 대한 지배체제와 함께 수취체제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갔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시기 이전부터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수취체제의 단계적 변화에 대한 규명은 신라 사회의 체제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다. 그와 함께 부산지역의 지방제도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 간 지역사회와 단계적 변화도 신라사의 한 단면을 조망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 국가의 수취체제는 아직 학계에서도 정설화된 체계적 설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사료의 부족 때문이지만, 그와 함께 방법론적 한계도 동시에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체계적 검토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삼국 가운데에서도 신라를 중심으로 하여 수취체제의 전반적 변화, 특히 부산지역과의 상관성을 고려하면서 지역적 특징을 살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신라 중고기 이전, 신라 중고기, 신라 중대, 세 단계의 수취체제의 특징과 민의 모습을 당시 사회의 구조적 특징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각 시기 부산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를 살펴 볼 것이다. 특히 통일신라기는 신라촌락문서와의 비교를 통하여 지역적 특징과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신라 중고기 이전의 수취체제와 民

신라 중고기는 고대국가 체제를 확립해가는 시기로서 법흥왕대의 율령 반포를 계기로 고대국가의 기본틀을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고대국가체제의 확립은 수취체제의 확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수취체제는 법제적 장치의 확보와 함께 민의 부담 능력의 향상이라고 하는 생산력적 발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시의 생산력적 발전의 정도를 가늠하기는 곤란하지만,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4~6세기 생산력 발전의 향상을 유추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¹⁾ 이러한 요소들은 신라의 발전을 추동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족의 사적 예속민으로부터 공민으로의 발전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이다.

1~3세기 삼한 사회는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서 전하고 있듯이 변진한의 민들은 지배체제의 면에서 아직까지 체계화된 단계는 아니었다. 국읍에는 主帥가 있으나 읍락이 잡거하여 서로 제어하지 못한다는 기록을 통해 볼 때 삼한 사회는 국읍과 읍락의 구분 정도가 있었으며 주수의 권위가 읍락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단계였다.²⁾ 그러나 국읍-주수, 읍락-호민, 將帥, 渠帥 등의 관계로

1) 전덕재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사회변동」.

볼 때 각 읍락에는 장수, 거수, 호민으로 불려지는 지배층이 각 읍락의 하호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국읍의 주수와 각 읍락의 거수 등은 엄격한 상하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느슨한 복속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세기 경에는 각 소국간에 강대한 세력을 중심으로 연맹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으며, 국읍 주수의 지배력이 강화됨에 따라 지배 서열이 성립되어 있었다.³⁾ 그에 따라 각 국읍의 주수들은 대외 교역을 주관하거나, 군사 활동의 지휘권을 갖고, 천군을 통한 농경의례의 주재로 국읍과 읍락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가짐으로써 국읍 주수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어 갔을 것으로 판단된다.

1~3세기 단계 읍락 내부에는 이미 계층분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읍락 내의 호민과 하호의 존재는 공동체 내부의 지배-피지배 관계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다. 『三國志』 위서 동이전을 통해 당시 하호의 존재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1) 邑落有豪民 民下戶皆爲奴僕 (夫餘)

1-2) 有敵 諸加自戰 下戶俱贍糧飲食之 (夫餘)

1-3)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 (高句麗)

1-4) 自漢以來 其官有侯邑君三老 統主下戶 (濊)

1-5) 其俗好衣幘 下戶詣郡朝謁 皆假衣幘 自服印綬衣幘千有餘人 (韓)

1-1)에서 읍락에는 지배층으로서 호민과 피지배층으로서 하호가 있음을 보여준다. 1-2)는 적이 쳐들어 왔을 경우 諸加 세력들은 스스로 전쟁에 나서고 하호들은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제가

2)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

3)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一潮閣, 1993) 107~108쪽.

세력은 부여의 지배층으로서 사출도를 주관하면서 수백 가에서 수천 가에 이르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존재였다. 여기서 각 지역의 ‘家’들은 모두 병장기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⁴⁾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家’의 ‘民’과 ‘下戶’는 동일한 존재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여의 경우만해도 병장기를 소유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戰士 집단과 그것을 지원하는 하호 집단 사이에 일정한 계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사집단은 과연 누구였을까. 여기서 제일 먼저 상정할 수 있는 존재는 豪民이다. 읍락 구성원의 하나인 豪民과 下戶, 그 사이에는 또 다른 계층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필자의 생각으로 ‘民’의 내부는 다양한 계층으로 구분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을 단순화시키면 호민, 민, 하호로 나누어 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따라서 1-1) 사료의 해석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읍락에는 호민과 민이 있으며, 하호는 모두 노복이 되었다’라고 해석되어야 하고, 하호는 ‘民’을 구성하는 하층민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1-3)에 의하면 “그 나라의 大家는 농사일을 하지 않으며, 좌식자가 만여 구 있다. 下戶는 쌀과 양식, 생선과 소금을 먼 거리에까지 지어다 바친다”라고 하여 대가와 하호의 상호 관계를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大家는 아마도 豪民과 같은 존재를 의미한다고 여겨지고 下戶는 생산을 비롯하여 운반의 책임까지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료는 1-2)와 비슷한 느낌을 준다. 전사 집단이 아닌 하호는 식량 부담의 책임을 맡은 것처럼, 대가와 같은 좌식자에게 생선과 소금을 가져다 바치는 존재였던 하호는 마치 노복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하호가 노비는 아니었다. 노비는 賤 신분으로서 형벌노예의 예처럼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 사람은 적몰하여 노비로 삼는다’고 하여 양천의 구분이 분명했던 것이다. 따라서 하호는 노비와는 신분적으로 구분되면서 전

4) 『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 夫餘 「以弓矢刀矛爲兵 家家自有鎧仗」.

사집단으로서 역할도 하지 못하는 생산자층이었음을 알 수 있다.

1-4)에 의하면 侯·邑君·三老가 하호를 ‘統主’한다고 하여, 마치 하호가 이들 官에 의하여 특별히 관리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다음 사료는 주목해볼만 하다.

1-6)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三國志』 권 30, 魏書 東夷 濊)

正始 8년(247년) 다시 불내예왕으로 봉해지고, 民(백성)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항상 郡에 조알하고, 2군에 戰役이 있어 租賦를 거두면, (濊의 백성에게도) 제공하게 하고 사역을 시키는 것이 (郡)의 민처럼 취급하였다고 하여 같은 자료에서도 ‘下戶’와 ‘民’은 구분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民’ 내부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하호는 읍락 사회의 내부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면서 전쟁시에는 전사 집단을 보조하고, 평상시에는 읍락의 호민들에게 종속되어 그들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사역 집단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1-8) 사료 가운데 ‘又使大加 統責其租稅 貂布魚鹽 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사료는 참고가 된다. 고구려가 옥저를 복속한 후 大加로 하여금 조세 수취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동옥저의 민으로 하여금 貂布·魚·鹽의 생산과 운반을 맡기고 있다. 이는 1-2) 사료에서 전시에 하호로 하여금 식량을 공급하게 한 것이나, 1-3)처럼 하호들이 좌식자들에게 멀리서 식량과 魚鹽을 나르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렇다면 옥저의 예에서 비추어 보아 하호는 원래는 소속 집단의 일반민이었으나, 타국에 복속됨으로써 ‘下戶’적 존재로 전락하여, 지배집단의 예속적 존재로 사역당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양자의 상호 관계가 무엇을 매개로 이루어졌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토지를 비롯한 재산 소유 규

모의 차이에 의한 분화에 기인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단계 각 읍락에 존재하는 구성원들은 호민·민·하호와 노비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호민·민·하호는 재산 소유 규모의 차이에 의해 차별화되면서 하호는 생산 수단 및 노동 수단 소유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제가, 호민 등에게 종속화된 존재로 역사상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복속지역의 민들도 지배 집단에 복속됨으로 인하여 지배집단의 읍락내에 존재하는 하호와 아울러 ‘하호’적 존재로 전락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한편 노비는 형벌, 채무, 전쟁 포로 등에 의해 신분적으로 賤 신분으로 분류되어 가내노예적 존재로 읍락내의 호민층 등의 가사 노동에 종사했을 것이다. 중간층으로서 이 시기의 ‘民’들은 자기 노동에 기초한 생산력적 조건을 바탕으로 일정한 ‘자영성’을 확보하면서 전쟁시에는 전사 집단으로 차출되어 전선에 뛰어 들었을 것이며, 이러한 ‘戰士’로서의 의무는 그와 동시에 읍락사회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 단계의 수취체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중앙에 형성되고 있던 지배층이 그들의 관할 구역내에서 약탈적 조세수취를 행하고 있었다거나, 토착세력을 매개로 하여 통치와 조세 수취가 행해졌음을 살피고 있다.⁵⁾ 아마도 이 단계는 토지 소유를 매개로 한 지대 수취와 같은 수취 방식은 아직 이루어지기 어려웠으리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소국간의 전쟁과 복속 등 무력에 의한 지배-복속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내부적 수취방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⁶⁾ 따라서 고구려의 5부나 신라의 6부내에

5) 김기홍 「삼국시대의 租·調」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역사비평사, 1991) 60~61쪽.

6) 최근 부체제론에 의한 대민수취 방식을 검토한 논고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金基興 「三國의 對民收取」 『韓國 古代·中世의 支配體制와 農民』 지식산업사, 1997, 48~51쪽). 이에 의하면 부내의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성층화와 갈등 양상을 통해 정규적인 수취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제시한 점은 의미있는 지적이다.

서는 자체적 가신조직에 의해 수취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졌을 것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을 통해서 조세 수취와 관련된 자료를 적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 1-7) 季父牛加有二心 位居殺季父父子 籍沒財物 遣使簿斂送官
(夫餘)
- 1-8)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 統責其租稅 貂布魚鹽 海中食物 千里
擔負致之 又送其美女 以爲婢妾 遇之如奴僕 (東沃沮)
- 1-9) 自漢以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挹婁)

1-7) 사료의 내용에 의하면 正始 연간에 유주자사 관구검이 고구려를 토벌하면서 현도 태수 王頎를 파견하자, 위거는 대가를 보내 왕기를 맞이하고 군량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계부인 우가가 탄 마음을 품자 그 부자를 죽이고 그 재물을 적몰하였으며, 관리를 보내 부세장부를 만들어 관에 보내었다고 한다. 여기서 ‘簿斂’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하는 점은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단순하게 ‘(우가의) 재산목록’이라고 보기도 하지만,⁷⁾ 이것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부세장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여겨진다.

부여에는 ‘加’ 계층이 있으며, 이들은 각기 四出道를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천가, 작은 곳은 수백가였다고 하였다. 앞의 牛加는 ‘加’ 계층으로서 자신이 주관하는 지역이 있었을 것이며 ‘簿斂’은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수취를 위한 ‘징세 대장’이 아니었을까 하는 점이다. 그렇다면 ‘加’ 계층은 자신들의 지배 지역에 대한 수취의 권리와 책임을 맡고 있었다고 여겨지며, 叛心에

7) 『中國正史朝鮮傳(譯註 1)』(국사편찬위원회, 1987) 215쪽.

대한 책임을 물어 죽음과 아울러 재산을 몰수하고, 수취권을 빼앗아 관에 돌려주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수취에 대한 책임은 ‘加’계층의 가신 조직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조에 의하면 대가들은 使者・阜衣・先人 등의 가신을 두었다는 것으로 보아 대가들은 이들 가신들을 통해 자신들의 지배 지역을 다스렸을 것이다.

1-8)에 의하면 옥저가 고구려에 臣屬되어 고구려는 대인을 두고 使者로 삼고 相加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⁸⁾ 또한 大加로 하여금 조세를 책임지도록 하여 백포・생선・소금을 천리나 지고 나르게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옥저에 대한 조세 수취의 책임은 대가가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인 옥저에 대한 지배는 使者・相・大加 등이 각각 분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옥저 출신인 사자는 조세 수취의 책임을 맡은 대가를 보조하여 현지에서 조세를 거두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⁹⁾ 이처럼 고구려의 복속 지역인 옥저에 대한 공납제적 지배는 당시 주요한 수취방식의 하나일 것으로 여겨진다.¹⁰⁾

그러나 복속지역에 대한 공납제적 지배는 1-9) 읍루의 예처럼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부여가 臣屬한 읍루에 대해 과중한 租賦를 부과하자 읍루가 반발하였고, 이에 부여는 여러 차례 응징하였다. 여기서 읍루는 부여가 부과한 조부를 수취하여 읍루

8) 『中國正史朝鮮傳(譯註1)』(國史編纂委員會, 1987) 258쪽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을 ‘고구려는 그 (지역의 인물) 중에서 大人을 두고 使者로 삼아 (토착 거수와) 함께 통치하게 하였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使相主領’의 해석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원래의 해석에 의하면 옥저의 인물 중에서 선정한 大人(使者)과 토착거수가 함께 옥저 지역을 통치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으나, 그것보다는 ‘使相主領’의 ‘相’을 고구려의 官 가운데 ‘相加’로 보고 ‘相加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였다’는 의미로 볼 수 없을까.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의 옥저에 대한 통치는 실질적으로는 옥저 출신의 대인을 使者로 삼아 통치하게 하고, 고구려의 相加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9) 金哲堧 ‘高句麗・新羅의 官階組織의 成立過程’ 『韓國古代社會研究』 133쪽.

10) 金基興, 앞의 논문(1997), 51~56쪽.

의 ‘民’으로 하여금 1-8)의 동옥저처럼 부여로 운반하는 과중한 부담을 지웠을 것이다. 읍루는 이에 반발한 것이며, 다른 지역의 복속민들도 과중한 부담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1~3세기의 수취 방식은 생산력적 한계 조건과 지배체제의 미숙성, 지배-복속으로 인한 상호 관계로 인하여 지배 집단의 무력적 기반을 토대로 가신을 매개로 한 수취와 복속 지역에 대한 공납제적 수취가 지배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취의 기준에 있어서도 토지에 기반한 조세 수취보다는 인신에 기반한 노동력 수취가 중심을 이루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의 여러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신에 대한 지배가 수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Ⅲ. 신라 중고기 수취체제와 民

1. 수취체제와 수취방식

4세기대 이후 삼한사회는 새로운 변화를 맞고 있었다. 특히 신라는 2세기말경에 이르러 사로국은 국읍 중심의 내부 단결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외 정벌에 나서게 된다. 특히 파사니사금~점해니사금대, 즉 2세기 초~3세기 중엽의 시기에 인근 소국을 복속시키는 기사가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후 지증왕, 법흥왕대까지는 소국 병합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상북도 일원의 소국 복속은 3세기 중엽에 일단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복속이 바로 정복과 같은 의미는 아니었다. 피복속국의 반란 사례가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초기의 복속이란 진한의 맹주인 사로국에 대해 종주권을 인정하고 의례적인 공물을 납부하는 정도의 것으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¹¹⁾ 이 시기 사로국의 내부와 주변 소국에 대한 수취 방식은 앞의 부여나 고구려의 예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로국 내부에서는 6부를 중심으로 내부적 수취 체계가 존재했을 것이며, 복속 소국에 대해서는 공납제적 수취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4세기 중엽 내물마립간 시기에 이르면 전대와는 다른 체제 정비가 이루어지고, 5세기대에 들어오면 고총고분이 등장하면서 신라의 왕권이 급속히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비 마립간 12년(469)에는 서울의 方里 이름을 제정하였고, 소지마립간 9년(487)에는 사방에 郵驛을 설치하고, 12년에는 시장을 열어 사방의 물화가 유통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운송수단이 개발되고, 도로가 정비되면서 교역의 규모가 확대되고 수도의 규모도 확장되어 갔음을 보여준다.

또한 5세기 이후에는 축성 사업의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데 이와 함께 築城役을 위한 役夫의 동원 사례는 당시의 수취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비마립간 11년(468)에 何瑟羅人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泥河에 성을 쌓았으며, 소지마립간 8년에는 一善界의 丁夫 3000명을 동원하여 三年山城과 屈山城을 쌓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아직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않았지만 지방민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일정 나이 이상의 인원을 동원한다든가, ‘丁夫 3000명’을 동원하는 사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초보적인 호구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¹²⁾

4~6세기 철제농기구의 보급과 우경의 보급 등으로 인한 농업생산력의 발전은 신라사회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¹³⁾ 이와 관련하여 눌지마립간 13년(429)에는 돌레 2170보에 이르는 矢堤를 축조했다는 기록은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수리

11) 이우태 「신라의 성립과 발전」 『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1997) 40~49쪽.

12) 이우태 「나제동맹의 결성과 정치적 발전」 『한국사』7 (국사편찬위원회, 1997) 74~76쪽.

13) 全德在 「4~6세기 농업생산력의 발달과 사회 변동」 『역사와 현실』4, 1990.

시설의 확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¹⁴⁾ 수리 시설의 축조는 축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많은 인력이 동원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役 동원을 위한 조직과 연령별 호구 파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¹⁵⁾

지증왕대에 이르러 신라는 州郡制를 시행하면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주군제의 기본단위로서 城·村의 재지세력인 촌주를 매개로 하여 각 지역을 지배하였다. 따라서 이 단계에 이르면 일반민들의 존재는 종래의 하호적 상태로부터 국가의 직접적 지배를 받는 公民으로의 지위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가의 파악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 단계 일반민은 국가의 수취체계 내에 포섭되어 국가의 조용조를 부담하는 수취 부담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법흥왕대의 율령 반포는 여러 가지의 법적 장치 가운데에서도 수취제도의 법제화도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율령내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수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길은 없다. 그러나 앞서 축성역의 예에서 보았듯이 연령에 따른 요역 수취의 규정은 이미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6세기 중반 단양 적성비에서 小子, 小女 등 연령의 구분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율령내 수취 규정이 존재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요역 외 현물 수취와 관련한 것으로 고구려, 백제에서 米·粟·絹布를 바치게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신라에서도 대동소이했을 것으로 여겨진다.¹⁶⁾ 신라의 조세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중앙관

14) 『三國史記』 권3, 신라본기3, 눌지마립간 13년.

15) 사로국내의 정치 조직에 관해 알려진 것은 별로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경우를 참고해본다면 각 部の 長 아래에 使者·阜衣·仙人과 같은 독자적인 관원이 있는 것과 같이 사로국의 6부내에도 이와 같은 관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권1, 신라본기1, 파사왕 21년조에 의하면 음즙벌국과 실직곡국 사이의 분쟁에서 수로왕이 이를 조정하기 위해 왔을 때, 그를 접대하기 위해 각부에서 伊滄을 파견했다는 기사를 참고해본다면 각 부에는 일정한 관원 조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6) 『周書』 권49, 列傳41, 異域 上, 高麗, 百濟.

부는 稟主이다. 품주는 신라의 최고 관부인 執事部の 전신이다.¹⁷⁾ 그런데 품주는 祖主(租主)라고도 불렸다는 것으로 보아 품주는 재정에 관한 일을 맡았을 것으로 여겨진다.¹⁸⁾ 그렇다면 원래 租의 수취를 담당한 관부였을 가능성이 높을텐데, 이와 관련하여 진평왕 6년(584)에 調府가 설치되고 그 역할이 貢賦를 수취하는 것으로 보아 품주로부터 調府가 분리되어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¹⁹⁾ 그런데 眞德王 5년(651)에는 품주로부터 倉府가 분리되어 나와서 執事部和 창부로 나누어졌다. 따라서 품주의 본래 기능에는 국가 재정 및 조세 수취와 관련된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품주의 始置 시기는 대체로 중고기 초반으로 보는 편인데, 율령 반포 이후 제도 정비의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²⁰⁾

지방제도를 매개로 한 수취제도가 정비되어 갔다. 지증왕 6년 나라 안에 주군현을 두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지방제도가 점차 정비되어 갔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방제도의 정비는 율령반포의 기초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지방의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군관구적 성격이 강한 州制의 시행은 신라가 지배 영역을 확대하면서 군사적 거점지역과 행정적 거점지역을 동시에 포괄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 州는 광역주와 협의의 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주에는 각각 지방관이 파견된 것으로 보여진다.

당시의 지방관으로서 창녕비에 의하면 상주·하주 등 광역주에는 州行使大等 2명이 임명되었고 협의의 州에는 軍主가 임명되었

17) 『三國史記』 권5, 신라본기5, 眞德王 5년 2월.

18) 李丙燾 「古代南堂考」 『人文社會科學』1 (서울대論文集, 1954); 李弘植 「三國史記의 租의 用法」 『人文社會科學』2 (서울대論文集, 1955) 『韓國古代史의 研究』, 1971; 李基白 「稟主考」 『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 1964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1, 135~136쪽.

19) 李基白, 앞의 책(1971), 141~142쪽.

20) 李丙燾는 智證王·法興王대 쑤므로 보고(앞의 논문, 16쪽), 李基白은 품주시대의 관직으로서 최초로 典大 등이 설치되었던 진흥왕 26년(565)으로 보고 있다(앞의 책, 136~140쪽).

다. 군주는 주의 지방장관이자 왕경인으로 편성된 6정의 군단장이었다. 따라서 州治에는 군주 외에 道使 · 停助人, 그리고 6정 소속의 군관과 병졸이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군주는 왕명을 받아 협의의 주내에서 행정권 · 사법권을 행사하고 6정과 郡 · 城 · 村의 법당병력을 통솔할 수 있었다. 郡에는 幢主가 파견되었으며, 당주도 군주와 마찬가지로 지방관이면서 동시에 군관이었다. 6세기 후반 군의 설치와 지방관의 파견이 확대되면서 「명활산성비(551)」와 「남산신성비」에는 邏頭가 보인다. 이 나두는 새로 증설된 군에 파견된 법당군관이면서 동시에 지방관이었다. 주 · 군 아래에는 城 · 村이 있었으며, 성촌에는 道使가 파견되었다. 「봉평비」에 의하면 도사는 3~4개 촌 가운데 중심촌에만 파견되었으며, 주변 촌에는 지방민으로 使人이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²¹⁾

「남산신성비」에 의하면 군을 단위로 지방민을 역역에 동원하고 행정성 · 촌에 작업을 분담시켜 축성공사를 마무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성촌이 역역 징발의 기초 단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6세기 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역역의 수취는 지방조직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중고기 조세 수취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 제도가 점차 정비되어 가면서, 조세의 수송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교통로의 개척과 관련한 부서의 정비도 고려해 볼 수 있다.²²⁾ 특히 교통로는 국가의 명령을 지방에 전달하고 지방 세력을 견제 제압할 수 있는 정치적 · 군사적 목적 외에 각종 물화의 유통 및 조세의 운송로로서 활용되었을 것임은 쉬이 짐작이 된다. 소지왕 9년(487) 사망에 郵驛을 두고 官道를 수리하였다는 기사는 이와 관련

21) 이인철 「지방 · 군사제도」 『한국사』7, (국편위, 1997) 193~201쪽.

22) 船府署가 진평왕 5년(583) 설치되고 있으며, 또한 乘府도 설치되었다. 이 船府署는 원래 병부 소속의 관부였으며, 문무왕 18년에 이르러 독립관부로 되었다. 선부서는 원래 병부 소속이었던 만큼 군사적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였을 것이지만, 평상시에는 조세 운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²³⁾ 이어서 소지왕 12년에는 서울에 시장을 개설하여 사방의 물화를 통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교통로 정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고기 신라의 수취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는 거의 없다. 다만 고구려의 수취 방식을 알려주는 자료가 『隋書』 권81, 東夷 고려전에 전하고 있다. 이것이 신라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北史』 신라전에 의하면 풍속·刑政·의복이 대략 고구려 및 백제와 같다고 하였으며,²⁴⁾ 백제의 사정을 전하고 있는 『舊唐書』에 의하면 ‘부세와 풍토, 그리고 산물이 고구려와 같은 점이 많다’고 한 점으로 보아,²⁵⁾ 고구려·백제·신라의 세제는 대동소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隋書』에 의하면 고구려의 조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① 人稅布五匹 穀五石 ② 遊人則三年一稅 十人共細布一匹 租戶一石 次七斗 下五斗

『隋書』가 수나라의 역사(589~618)를 기술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의 기록은 6세기대 고구려의 수취방식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유인의 해석을 둘러싸고 크게 遊人=빈민설²⁶⁾과 遊人=이종족민설²⁷⁾로 나뉘어져 있다.²⁸⁾ 또한 조의 징수와 관련하여 戶租 수취의 대상을 유인만으로 보거나, 人이 부담한다고 보거나, 둘 다 부담한

2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왕 9년 3월.

24) 『北史』新羅傳「風俗刑政衣服 略與高麗百濟同」.

25) 『舊唐書』 권199 상, 東夷, 百濟 傳.

26) 白南雲 『朝鮮社會經濟史』 1933. 백남운의 견해이래 대체로 유인=빈민설의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7) 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역사비평사, 1991.

28) 김기홍, 앞의 책(1991), 28~50쪽 참고.

다고 보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²⁹⁾

이와 관련하여 위의 규정을 좀 더 구분하여 살펴보면, ①②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은 人을 대상으로 ②는 遊人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人의 稅布 5필과 穀 5석은 유인의 세포와 戶租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당시의 부세는 人이든 유인이든 布와 穀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그런데 人에 대한 부세는 유인에 비해서 특별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매년 丁男을 중심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유인은 3년에 한번 세를 내되 10인이 함께 細布 1필을 내도록 하고, 人의 穀에 해당하는 租는 호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1석, 7두, 5두를 내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의 戶租는 유인의 경제 상태를 고려하여 차액을 최소화하여 호등에 따라 유인에게 부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조세 규정에서 호등제와 관련되는 부분은 租의 수취규정에서 보이는 부분이다. 여기서 호등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은 호당 부과되는 租의 차이인데, 각각 1석, 7두, 5두로서 그 차이는 실로 적다.³⁰⁾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참고한다면 이 시기 1되의 크기는 200ml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³¹⁾ 따라서 1석의 크기는 20리터 정도가 되며, 각 호등간 租의 차이는 극히 적다. 이는 토지소유규모의 차이를 반영한 결부제에 입각한 收稅가 아니라, 호등의 차별성을 반영한 상징적 戶租라고 여겨진다. 이는 일반민으로 여겨지는 人과는 달리 유인은 인과는 다른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조처라고 여겨

29) 김기홍, 앞의 책(1991), 28쪽 참고. 김용섭 교수의 경우, 戶租는 人, 遊人 모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雜調에 해당하는 부가세로 보고, 이를 고구려 부세의 특징으로 파악한다(『結負制의 展開過程』『韓國中世農業史研究』지식산업사, 2000, 171~177쪽).

30) 고구려의 1石은 대체로 10斗로 파악하는 편이다(李宇泰 『韓國 古代의 量制』『泰東古典研究』10, 1993).

31) 朴興秀 「新羅 및 高麗 時代의 量制度와 量尺에 대하여」『科學技術研究』5, 1977(『度量衡과 國樂論叢』, 1980); 呂恩英 「高麗時代의 量制 - 結負制 이해의 기초로서」『慶尙史學』3, 1987; 李宇泰 「韓國 古代의 量制」『泰東古典研究』10, 1993; 李宗峯 「高麗時代 度量衡制 研究」부산대박사학위논문, 1999; 尹善泰 「新羅下代의 量制에 관한 一試論」『新羅文化』17·18, 2000.

진다. 따라서 인의 경우는 개별 인신에 대한 부과 방식을 가지고 있음에 비해서, 유인에 대해서는 공동적 책임을 지우며, 租는 호별로 호등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시 고구려의 수세는 토지보다 인신에 대한 수세의 중요성이 훨씬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구려의 수취는 인두세적 경향이 강함을 엿볼 수 있다.³²⁾ 이 기록을 통해 수취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丁男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면 정남 1인에 대해 포 5필과 곡 5석이라는 수취는 매우 과도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³⁾ 더욱이 일반 농민층에게 일률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부과되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당시 한전의 생산력적 수준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高麗史』 권 78, 식화지1, 租稅 성종 11(992)년 劄에 의하면 한전의 경우 1결당 생산량은 상등전 9석, 중등전 7석, 하등전 5석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고구려인들의 평균적인 토지소유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고려의 예에 비추어 일반농민층이 1결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본다면 상등전 1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해의 수조액을 부담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고구려의 수취액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만약 고구려의 일반 자영소농의 가족 구성을 평균 5인 내외로 본다면³⁴⁾ 1戶에 정남이 2인이 된다고 해도 그 부담은 2배가 된다. 이런 이유로 위의 수취 내용을 1戶의 부담이라고 보는 견해

32) 김기홍, 앞의 책(1991), 67~70쪽 ; 「三國時代 稅制의 성격」 『國史館論叢』 35, 1992.

33) 수취의 과도성이라는 이유로 포 5필과 곡 5석을 나누어 둘 중의 하나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洪承基, 「1~3世紀 民의 存在形態에 관한 一考察」 『歷史學報』 63, 1974, 42~43쪽) 한편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당시 고구려의 대내외적 정치 상황으로 인하여 수취가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한다(盧重國, 1979, 「高句麗 律令에 關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159쪽).

34) 金琪燮, 「高麗前期 農民의 土地所有와 田柴科의 性格」 『韓國史論』 17, 1987, 122~123쪽.

도 있다.³⁵⁾

이와 관련하여 『周書』 권 49, 고려전의 내용은 참고가 될 수 있다.

賦稅則絹布及粟 隨其所有 量貧富差等輸之

『周書』는 北周 5世(557~581) 25년간의 역사를 기술한 史書로서 앞의 『隋書』보다 다소 이른 시기의 역사적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 사료를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진다. 하나는 ‘隨其所有’를 재산의 소유정도로 보고 ‘量貧富差等輸之’와 연결하여 해석하는 방식과 또 하나는 ‘隨其所有’를 담세자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지의 여부로 보고 이를 ‘量貧富差等輸之’와 연결시켜 빈부의 차등에 따라 내되 견, 포, 속 중에서 그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을 내는 것으로 보는 방식이 있다.³⁶⁾

어쨌든 『周書』와 『隋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隋書』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세 수취의 합리성 측면에서는 『周書』가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사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며, 양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두 사서의 내용이 시기적 차이를 둔다든가 아니면 특수한 경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면 두 사서의 내용을 동시에 만족시켜줄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수서』는 『주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부세에 관한 포괄적 설명은 『周書』를 통해 살필 수 있다. 즉 부세의 종류는 絹·布·粟인데 그 소유(내용)에 따라 빈부의 차이를 헤아려서 낸다고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부세의 종류는 견·포와 속의 두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앞서 『隋書』에서 布와 穀으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이다. 또한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후반부에서 빈부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내용인데, 이는 당시

35) 金基興, 앞의 책(1991), 67~70쪽.

36) 金基興, 앞의 책(1991), 53~54쪽.

수취방식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수서』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隋書』의 내용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隋書』는 구체적인 세액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빈부의 차이를 고려한 내용이라는 의미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좀 더 부연한다면 租의 부분에서 戶당 1석을 내되 次는 7두, 下는 5두라는 부분에서 빈부의 차이를 고려한 흔적을 찾을 수 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는 그 차액이 너무 적으며, 이는 遊人에게 부과되는 호조로 여겨지기 때문에 人과는 무관하다. 사실상 賦稅의 의미는 1戶의 총괄적 세인 租庸調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³⁷⁾ 따라서 『隋書』는 『周書』와는 그 의미를 매우 달리 하고 있다.

그러나 『隋書』의 내용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검토해본다면 人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이미 빈부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점이다. 즉 1호의 가족 구성 상 정남의 수가 많다면 1호의 세액은 자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자체가 당시 빈부의 차이를 감안하는 방안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볼 수 있다.³⁸⁾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은 ‘隨其所有’의 해석에 있다고 생각된다. ‘隨其所有’의 ‘其’의 의미는 앞의

37) 朴鍾進, 1991, 「高麗時期 稅目의 用例檢討」, 『國史館論叢』21.

38) 필자는 통일신라기와 고려시기 전정제 및 호등제를 검토하면서 당시 호등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人丁과 土地가 결합된 농업경영규모의 차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일정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경작할 수 있는 경작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농업경영규모라는 것은 호등 구분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경영규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토지소유규모가 많으면 당연히 경작노동력도 많아지게 되고 자연히 상위 호등으로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경작노동력의 질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여기서 신라중고기와 신라 통일기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신라통일기의 수취는 그 중심이 토지 쪽으로 기울어져 가면서 상위 호등으로 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경작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반면에 신라중고기는 상대적으로 토지보다는 인정에 대한 수취의 강도가 높음으로써 인두세적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토지 경작의 상대적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토지를 수취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반면에 토지개간의 가능성이 높음으로써 인정이 많은 호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했을 것이며, 인정 중심의 수취를 하더라도 빈부의 차이를 일정하게 반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絹·布·粟을 의미하며 ‘그것의 소유에 따라서’라는 의미는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의 소유’를 동시에 의미하고 있다. 즉 본래는 ‘생산물 소유의 양에 따라서’라는 의미이지만, 그것은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력의 소유에 따라서’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주서』의 전체적인 의미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노동력의 소유 규모에 따라 빈부를 해아려서 차이를 두어 거둔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력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개별 가호의 경제력의 규모가 정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상기한다면 『隋書』에서 人에 대한 구체적 수취내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周書』에 나타나는 ‘量貧富差等輸之’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닐 것이다.³⁹⁾ 다만 『隋書』의 내용은 신라통일기 이후의 수취기준과는 달리 수취의 기준이 인정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⁴⁰⁾ 또한 『周書』가 표현하고 있는 ‘量貧富差等輸之’의 의미에는 賦稅를 운반해서 납부하는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조세의 운반을 위해서는 일정한 노동력이 필요하며 부유한 호일수록 생산물을 생산해서 조세를 납부하기까지에 많은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정수의 다과는 호의 빈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⁴¹⁾

39) 『周書』 『北史』의 百濟傳에 의하면 “賦稅以布絹絲麻及米等 量歲豐儉 差等輸之”라고 하여 부세는 풍흉에 따라 차등있게 내도록 하였다. 한편 이와 동시에 『舊唐書』 百濟傳에는 “凡賦稅及風土所產 多與高麗同”이라고 하여 백제와 고구려의 세제가 비슷함을 말하고 있다. 이 의미는 백제의 세제가 풍흉에 따른 차등수세라고 해서, 고구려처럼 인두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풍흉에 따른 차등수세와 인두세적 수세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40) 이인제는 통일 전후 수취제를 크게 인호지배로부터 토지지배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통일 이전을 두 단계로 나누어 인호의 노동력에 대한 총체적 지배로부터 4~6세기 생산력 발전을 거치면서, 재산 기준의 수취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본다(『신라통일 전후기 조세제도의 변동』 『역사와 현실』 제4호, 1990, 93~98쪽). 전체적 틀은 공감하지만 통일 이전 2단계의 재산 기준의 수취도 인신 지배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여러 정황들로 보아서 『隋書』 고려전의 사실이 신라 중고기의 세제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세액의 차이는 알 수 없지만, 신라의 세제는 고구려의 인두세적 세제 방식과 유사했을 것이다.

2. 부산지역의 수취체제와 民

신라 중고기 부산은 지금의 영역 구성으로 볼 때 東萊郡, 東平縣, 機張縣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삼국사기』 권34, 잡지3, 지리1 동래군조에 의하면 경덕왕 이전 동래는 원래 居漆山郡이었고, 동평현은 大飮縣, 기장현은 甲火良谷縣이었다. 아마도 이 이름들은 신라 중고기에도 그대로였을 가능성이 크지만, 통일신라기에 동래군이 동평현과 기장현을 거느리는 것처럼, 신라 중고기에도 영속관계가 그대로였을 지는 알 수 없다.

신라의 부산 진출은 아마도 광개토왕의 남정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의 남정으로 인하여 가야 지역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었고, 그 결과 가야제국의 맹주였던 금관가야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부산지방의 경우 5세기에는 고분의 규모가 커지고 그 안에 유물이 풍부하게 나타나며, 그 유물들은 경주에서 직접 받거나 경주 지방의 것을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라가 이 지역의 소국들에게 문물을 지원하고 대내적 통치권을 보장하여, 가야 제국의 팽창을 저지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²⁾ 이러한 과

41) 호동 구분의 기준은 중국이나 우리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재산의 소유 정도에 따른 것이며, 재산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토지일 것이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항상적 관리가 어려운 단계에서는 토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노동생산성이 우선되기 때문에 토지만으로 호동 구분의 기준을 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차선택으로 재산이라는 포괄적인 요소를 표시한 것이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은 인정이었을 것이다.

42) 金泰植 「後期 加耶聯盟體의 成立과 發展」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혜안, 2002) 194~200쪽.

정에서 동래의 거칠산국도 신라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 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눌지마립간 때인 5세기 전반기에 지금의 양산인 삼랑주가 신라의 영토에 들어 갔음을 당시 박제상의 직책이 敵良州干이었음을 통해 알 수 있다.⁴³⁾ 5세기 중반이 되면 북천동 고분군의 유물들이 신라 계통으로 바뀌는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 이르면 신라의 직접 지배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과정 속에 거칠산국은 서서히 그 명맥을 상실하고 신라의 거칠산군으로 편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거칠산국이 사로국에 복속적 지위에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수취 방식은 앞의 부여나 고구려의 예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로국 내부에서는 6부를 중심으로 내부적 수취 체계가 존재했을 것이며, 거칠산국에 대해서는 공납제적 수취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5세기대에 들어오면 고총고분이 등장하면서 신라의 왕권이 급속히 성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비 마립간 12년(469)에는 서울의 方里 이름을 제정하였고, 소지마립간 9년(487)에는 사방에 郵驛을 설치하고, 12년에는 시장을 열어 사방의 물화가 유통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운송수단이 개발되고, 도로가 정비되면서 거칠산국에 대한 공납제적 지배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 시기 거칠산국의 민들은 공납제적 수취체제하에서 下戶적 존재로서, 고구려에 복속한 옥저의 민과 같이 사역을 당했을 것이다. 고구려가 옥저를 복속한 후 大加로 하여금 조세 수취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동옥저의 민으로 하여금 貂布·魚·鹽의 생산과 운반을 맡기고 있다. 이는 1-2) 사료에서 전시에 하호로 하여금 식량을 공급하게 한 것이나, 1-3)처럼 하호들이 좌식자들에게 멀리서 식량과

43) 부산경남역사연구소편 『시민을 위한 부산의 역사』(늘함께, 1999) 46~50쪽 ; 이원균 『부산의 역사』(늘함께, 2000) 43~45쪽 ; 金泰植 「後期 加耶聯盟體의 成立과 發展」 『한국고대사 속의 가야』(해안, 2002) 194~200쪽.

魚鹽을 나르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그렇다면 옥저의 예에서 비추어 보아 하호는 원래는 소속 집단의 일반민이었으나, 타국에 복속됨으로써 ‘下戶’적 존재로 전락하여, 지배집단의 예속적 존재로 사역당하는 의무를 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6세기 이후가 되면 북천동 고분군, 연산동 고분군과 같은 규모가 큰 고분은 자취를 감추고, 규모도 작아지고 부장품도 양적·질적으로 빈약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거칠산국이 신라에 흡수 통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거칠산국에도 삼랑주와 같은 ‘干’적 존재가 들어섰을 것이다.

지증왕대 주군제의 시행은 부산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주군제의 시행이 바로 거칠산군의 설치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6세기 초 신라의 사정을 전하는 『梁書』 신라전에 의하면 신라에는 6縣評과 52邑勒이 있으며, 그것은 중국의 군현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6세기초 신라에서 주군제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州, 郡이 지방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6세기 초 주군제가 실시된 후 「明活山城作成碑」(551년) 이전의 금석문에서는 ‘郡’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다.⁴⁴⁾ 따라서 6세기초에는 아직 거칠산군이 설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6세기 중엽까지도 「남산신성비」에서처럼 촌락의 유력층을 郡 단위로 구분하는 것은 전 지역에 걸쳐 일반화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거칠산군의 설치의 보다 뒤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 대한 지배는 촌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영일냉수리신라비(503)에 의하면 이미 촌주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으며, 울진봉평신라비(524)에 의하면 아대해촌, 갈시조촌, 남미지촌에 ‘村使人’의 존재가 보이고 있다. ‘村使人’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村使人’은 지역민 출신의 재지 유력자로서 중심촌과 자연촌 또는 자연촌과 자연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자연촌에 대한

44) 李銖勳 『新羅中古期 村落支配研究』(부산대박사학위논문, 1995) 108~110쪽.

국가의 권력의 침투가 본격화되면서 두어진 직제로 보고 있다.⁴⁵⁾

따라서 당시 부산 지역에도 6세기 초반 단계에 신라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村使人’과 같은 존재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의 유력자로 하여금 ‘村使人’의 역할을 맡게 하여 국가의 역역동원, 조세 수취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을 맡겼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부산지역에 대한 신라의 진출은 신라의 가야 병합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이다. 가락국(금관가야)은 대가야나 안라와는 달리 532년에 자진하여 신라에 투항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는 가락국이 그 이전부터 신라의 영향 아래 들어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⁴⁶⁾ 따라서 가야의 투항은 부산지역에 거칠산군의 설치 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것이며, 6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명활산성작성비에서 보듯이 군의 존재가 분명히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즈음에서부터 각 지역에 군의 설치가 확대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거칠산군의 설치 시기를 6세기 중엽 무렵이라고 보는 것은 다소 성급한 추정일 수 있다.

그러나 6세기 말에 이르면 거칠산군의 설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남산신성비」(진평왕 13년, 591)에 의하면 몇 개의 성·촌이 하나의 군을 단위로 역역을 편성하고 있으며, 각 성촌에서 역역을 동원한 인물은 ‘郡上村主’와 ‘郡中上人’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⁷⁾ 이때 군의 기능이 행정단위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郡司’를 통해 조직적으로 역역편제를 담당하였는지,⁴⁸⁾ 아니면 단순한 감찰기능 정도에

45) 朱甫墩, 「新羅 中古期 郡司와 村司」 『韓國古代史研究』1, 1988, 50~51쪽 ;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신서원, 1998) 161~162쪽.

46) 이영식 「문헌으로 본 가락국사」 『가야각국사의 재구성』(부산대 한국민족문화 연구소편, 해안, 2000) 30~32쪽.

47) 古代社會研究所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2권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103~121쪽.

48) 朱甫墩, 앞의 책(1997), 197~203쪽.

머물면서 성촌에 파견된 邏頭・道使를 통해 지방민에 대한 역역 징발과 조세 수취를 담당하였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⁴⁹⁾ 그러나 이 시기에 이르면 성촌 단위에 지방관이 파견되었으며, 촌주를 통한 지방 행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남산신성비」 1비에 의하면 역역동원을 비롯한 공사의 진행과 관련된 인물로서 阿良邏頭, 奴含道使, 營沽道使 등의 지방관과 郡上村主 阿良村 今知, 柒吐△(村) △知忒利 등이 참가하고 있다. 여기서 아량촌에는 지방관인 나두가 파견되고 있으며, 아량촌이 이 지역의 중심촌으로서 여기에 파견된 지방관이 이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 비문을 통해 보듯이 이 시기의 촌락지배는 중고기 촌락지배방식의 변화 속에서 볼 때 가장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형태로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⁰⁾

이 단계에 이르면 부산 지역의 각 촌락은 각 지방관을 매개로 하여 신라의 직접적 지배하에 들어갔을 것이다. 거칠산군에 소속된 현은 大飢縣(동평현)과 甲火良谷縣(기장현)이다.⁵¹⁾ 『삼국사기』 지리지의 군과 영현이란 중고기 郡내에 존재하던 城과 村이 7세기 말 이후에 그 세력과 규모에 따라 분화 편제된 것이라면,⁵²⁾ 아마도 거칠산군에 소속된 대증현이나 갑화량곡현은 대증성(촌)이나 갑화량곡성(촌)으로 불리웠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6세기 말 당시에 거칠산군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거칠산군이 행정단위로서의 역할을 했을 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대증성(촌)이나 갑화량곡성(촌)은 각 지역의 중심촌으로서 나두나 도사가 파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증현이나 갑화량곡현은 해안 지역에 위치한 변

49) 李銖勳, 앞의 논문, 116~118쪽.

50) 朱甫墩 「6世紀 新羅의 村落支配 強化過程」 『앞의 책』(1998, 신서원) 184~185쪽.

51) 『三國史記』 권34, 지리지1, 東萊郡.

52) 李銖勳, 앞의 논문, 121쪽.

방으로서 군사적 기능이 강조되었다면, 나두와 같은 지방관이 파견되었을 것이다.⁵³⁾ 그렇다면 이들이 파견된 지역은 동래 지역과 대증현지역, 감화랑곡현 지역의 중심촌이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각 촌에는 촌주가 존재했을 것이며, 지방관은 촌주를 매개로 하여 각 지역에 대한 조세 수취 및 역역 부과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IV. 신라 중대 수취체제와 民

1. 수취체제와 수취방식

통일신라의 수취체제는 기본적으로 중앙통치조직의 정비와 맥을 같이하면서 정비되어 갔다. 수취체제와 관련된 관부로 調府와 倉部를 들 수 있다. 신라의 조세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중앙관부는 稟主이다. 품주는 신라의 최고 관부인 執事部の 전신으로 재정에 관한 일을 맡았을 것으로 본다. 진평왕 6년(584)에 調府가 설치되고 그 역할이 貢賦를 수취하는 것으로 보아 품주로부터 調府가 분리되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眞德王 5년(651)에는 품주로부터 倉部가 분리되어 執事部和 창부로 나누어졌다. 창부는 중앙의 재정을 관리하는 기구로서 調府를 감독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창부와 조부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중앙의 재정을 관할하였을 것이다.

7세기 중반에는 국가 재정을 위한 중앙의 조직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지방제도도 정비되어 갔다. 신라 중대에 이르면 신라의 지방제도는 주군현체제로 완성된다. 중고기의 城 · 村 지역에 縣이 두어지면서 군현제의 하부 행정단위가 정비되어 갔다. 신문왕 5년(685)에 이르러 一善州 · 歙良州 · 菁州 · 漢山州 ·

53) 李鉄勳, 앞의 논문, 123쪽.

首若州·河西州·泗泚州·浣山州·發羅州의 9주가 완비되었다. 주의 규모와 관할 범위는 다양하지만 각 주에는 總管 혹은 都督이라 불리는 지방관에 의해 다스려졌다. 또한 郡은 3~4개의 현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처럼 영현을 거느린 군은 그 직속촌으로 이루어진 영역과 영현이 차지하는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군의 지방관은 太守이며, 태수 이외에 지방 감찰을 담당한 外司正 1명이 파견되었다. 현에는 지방관으로 少守 혹은 縣令이 파견되었다. 현에는 중앙에서 법당군관이 파견되었으며, 지방민 출신의 縣吏들이 縣司를 구성하고 소수 혹은 현령을 보좌하였다. 태수·소수·현령은 일반행정권을 포함하여 병마권, 경찰권, 요역 징발·조세 수취권, 사법권을 행사하였다.⁵⁴⁾

지방의 기초 단위인 촌은 중고기의 촌과는 달리 개별 자연촌이 수취의 기초단위로서 상세하게 파악되고 있음을 촌락문서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 신라촌락문서에는 4개의 촌락이 등장하는데 서원경 소속의 직속촌으로 여겨지는 ○椒子村(D촌)과 이름을 알 수 없는 C촌을 제외한 두 촌락은 當縣 소속의 沙害漸村, 薩下知村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해점촌(A촌)에는 촌주위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촌주가 존재함을 알 수 있고, 반면에 같은 당현 소속이지만 살하지촌(B촌)에는 촌주위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모든 촌락에 촌주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C촌과 D촌에도 촌주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다. 어쨌든 그 기재양식으로 보아 이들 촌락은 주나 군의 영현에 소속된 촌락임을 알 수 있다.⁵⁵⁾

통일신라 주군현의 규모나 지배영역이 동질적이지는 않지만, 주군현 사이에는 지배관계와 명령·보고 계통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州는 중앙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아서 주의 도독이 휘하의 지방관이나 군관을 통하여 처리하였을 것이다. 또한 기초

54) 이인철 「지방·군사제도의 재편성」 『한국사』9 (국사편찬위원회편, 1998) 128~135쪽.

55) 李仁哲 「新羅村帳籍의 記載樣式과 作成年度」 『新羅村落社會史研究』(일지사, 1996) 49~51쪽.

단위인 촌에까지 이르는 명령의 경우, 주의 직속촌은 州吏를 통해서, 군에는 郡太守를 통하여 각 영현의 지방관에게 전달되고 그것은 다시 각 촌의 촌주에까지 전달되었을 것이다.⁵⁶⁾

통일신라의 촌락 지배는 기본적으로 군현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수취체제도 군현제를 바탕으로 재정운영 방식과 연계하여 짜여졌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군현제는 田丁과 戶口의 규모에 따라 정해졌다는 기록이 주목된다.⁵⁷⁾ 이는 각 군현에 대한 전정과 호구의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전정과 호구는 수취를 위한 기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 군현에 대한 수취의 규모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倉部는 중앙의 재정 기구로서 군현제적 지배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재정 운영의 틀을 만들었을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調府에서는 구체적인 수취액을 산정하여 9주의 도독에게 보내고, 도독은 다시 태수와 현령 등 지방관을 통하여 각 촌락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였을 것이다. 촌락에 대한 수취방식은 신라촌락문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신라촌락문서에 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우선 신라촌락문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촌락의 입지, 촌의 둘레, 孔烟數, 計烟數, 戶等에 따른 호수, 연령별 인구수 및 변동, 우마수 및 변동, 전답(烟受有田畓, 村官謨畓, 內視令畓, 村主位畓)의 면적, 수목수와 변동 등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들 기록은 개별 촌락에 관한 종합적 실태 보고서 같은 성격의 문서로서 그 성격에 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⁵⁸⁾ 이러한 촌락문서의 기록은 개별 촌락에 대한 기본적 조사이지만 전반적으로 수취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수취제도는 당의 조용조 수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56) 李仁哲 「村의 行政體系」 앞의 책, 91~97쪽.

57) 『新增東國輿地勝覽』 驪州牧 古跡 登神莊 「今按新羅建置州郡時 其田丁戶口未堪爲縣者 或置鄉或置部曲 屬于所在之邑」.

58) 李仁哲 「新羅村帳籍의 記載方式과 作成年度」 『앞의 책』 64~69쪽.

보고 있으며,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계연은 각 개별촌락의 조용조 수취 전반에 통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⁵⁹⁾ 따라서 신라촌락문서의 내용을 통해 국가의 촌락에 대한 파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다.

租는 토지에 대한 수취로서 이를 위해서는 量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양전은 결부제를 전제로 가능한 것인데, 신라에서는 이미 결부제가 실시되고 있었으며, 중국의 경무법도 함께 통용되고 있었다. 고려 前期의 結負가 상대면적단위가 아니었다는 점이 명백한 만큼 통일신라의 結負는 중국의 경무와 같이 절대면적으로 쓰여졌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성과에 의하면 경무의 면적과 결부의 면적은 절대면적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실제 면적은 차이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⁶⁰⁾ 어쨌든 결부제가 수용되면서 현실에 맞는 절대면적이 책정되고 토지를 매개로 수취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한국사의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획을 그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라 하겠다. 이는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삼국시기 농업생산력이 발전하면서 토지에 대한 항상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따라서 토지를 매개로 한 수취의 조건이 갖추어졌다는 점, 또 하나는 양척동일제의 기초조건이 갖

59) 李泰鎮 「新羅統一期の 村落支配와 計烟」 『한국사연구』 25, 1979.

60) 金容燮은 頃=結로 보고 1결의 면적은 17,500평 정도로 파악한 반면(「高麗時期의 量田制」 『東方學志』 16, 1975), 呂恩瑛은 結의 절대면적은 頃의 1/22임을 설명하고 1,500평 정도로 파악하였다(「高麗時代의 量田制」 5~20쪽). 兼若逸之의 경우 방 33보=1결에서 보는 포백적 6척이고 每 150보=1결의 보는 양전적 6척으로서 1결의 면적을 3,550평 정도로 보았다(「《高麗史》 方 33步 및 《高麗圖經》 每一百五十步의 面積에 대하여」 『孫寶基博士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이우태는 신라나 고려전기의 1결의 면적은 『慶尙道地理志』가 편찬되던 조선초기 1결의 면적과 비슷한 1,200평 정도이거나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다(「新羅의 量田制」 『國史館論叢』 37, 1992). 李宗峯은 경무법과 결부제를 비교하여 양자는 절대면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실질적인 면적은 달랐음을 제시하고 통일신라~고려전기 1결의 면적을 1,200평 정도로 보고 있다(『韓國中世度量衡制研究』 혜안, 2001, 289~304쪽).

추어졌다는 점이다.

삼국시기 여러 방면에서 생산력 발전의 기초조건이 갖추어져 가면서 토지이용방식이 진일보하게 되는데 그것은 휴한농법의 정착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⁶¹⁾ 수전의 비중이 높아져 가면서 수전에서 안정적인 세역전의 확보는 수세의 효율성을 위한 기초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의 경우는 연작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는 토지에 대한 수세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양척동일제 시행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 것이다. 양척동일제는 동일한 기준척으로 토지의 면적을 파악하고, 동일한 면적에 대해 수세를 차별화함으로써 수세의 형평성을 기하는 방식이다. 결부제라하더라도 양척동일제하에서는 절대면적에 따른 수세의 차별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양제에 상응하는 면적의 상정과 양전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대면적의 축소가 필수적이었다고 하겠다.⁶²⁾

이와 관련하여 『拙藁千百』 최대감묘지명에 인용된 최치원의 結에 대한 이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頃畝와 結負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양자가 서로 다른 면적체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61) 李泰鎮, 「畦田考」 『韓國學報』10, 1978 ; 「新羅統一期 村落支配와 孔烟」 『韓國史研究』25, 1979 ; 이상 『韓國社會史研究』 지식산업사, 1986 재수록.

金琪燮, 「高麗前期 農民의 土地所有와 田柴科의 性格」 『韓國史論』 17, 1987 ; 「新羅 統一期 田莊의 經營과 農業技術」 『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論文集 - 新羅産業經濟의 新研究-』 13집, 1992.

李喜寬, 「統一新羅時代의 烟受有田 · 畝과 그 耕營農民」 『史學研究』50, 1995.

李賢惠, 「한국 농업기술 발전의 諸時期」 『韓國史時代區分論』 翰林科學院, 1995 ; 『韓國 古代의 생산과 交易』 一潮閣, 1998 재수록.

62) 통일신라기에 결부제에 기초한 양전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려전기와 같이 차별적 수세가 이루어졌을 지는 의문이다. 토지의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한 결당 수세의 방식은 수세의 형평성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다. 그러나 통일신라에서 田品制에 기초하여 차별적 수세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신라의 전품제는 고려시대의 경우와는 달리 수취에서 차등적인 세액을 부과하는 정도까지 발전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한다(김기홍 『삼국 및 통일신라 세제의 연구』 167쪽).

東俗 以五畝減百弓爲結 斛除一斗爲苫 文昌侯云

여기서 수·당 240步²=1畝제로 계산하면 1결=5무($5 \times 240보^2 = 1200보^2$)-100(弓)보²=1100보²로서 고려 문종 23년 양전보수 方 33步=1089보²=1결과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준척이 같다고 한다면 통일신라와 고려의 1결 면적은 거의 비슷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양척통일제하 1결의 절대면적은 통일신라와 고려가 비슷하며 이는 두 시기의 생산력적 조건이 비슷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절대면적을 축소한 결부제의 시행으로 통일신라사회는 다양한 제도를 실현할 기초조건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신라의 결부제는 대략 문무왕대를 전후로 하여 법제화되었다고 본 견해는 이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 크다.⁶³⁾ 이 시기 결부제의 시행은 새로운 토지제도의 시행을 위한 기초 조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신문왕 7년(687) 관료전제의 시행과 또 하나는 성덕왕 21년(722) 백성에 대한 丁田 지급 및 경덕왕 16년(757) 부활된 녹읍이다.

여기서 丁田은 신라촌락문서 가운데 租의 수취와 관련된 烟受有田畓을 의미한다고 본다. 연수유전답은 왕토사상에 의해 국가로부터 형식적으로 지급된 토지라는 뜻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백성들의 소유지였던 것이다. 국가는 이들 토지에 대해 결부제에 근거하여 토지 소유규모에 따라 수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액에 관하여 알려진 것은 없다. 다만 『고려사』 권78, 식화1, 조세조에 의하면 “태봉의 왕이 舊制를 따르지 않고 1頃의 田에 6석의 세를 거두고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와 베짜기를 그만두게 하여 도망함이 서로 이어졌다. 지금부터는 부세를 거둬도 마땅히 구법에 따르도록 하라”고 하여, 태조는 궁예가 구법을 존중하지 않고 1경당 6석을 거두는 과중함을 비판하고 있다. 1경당 6석이라면 과

63) 李宇泰, 앞의 논문(1992), 30~34쪽.

전법체제하의 결당 2석을 기준으로 3배에 이르는 과중한 부담임을 알 수 있다.

고려초 성종 11년의 조세 수취 규정에 의하면 수전 하등전의 경우 생산량이 7석에 불과하고 수조액도 1석 11두 2승 5홉에 지나지 않으며, 상등전의 경우에도 생산량은 15석, 수조액은 3승 11두 2승 5홉 정도이다. 이렇게 본다면 1頃당 6석의 수취는 일반농민층이 수전 하등전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취하는 결과가 된다.⁶⁴⁾ 따라서 태조가 부세의 수취를 구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아마도 태봉 이전의 통일신라 세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⁶⁵⁾

이렇게 본다면 신라의 田租는 생산량의 1/10을 거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전기에 보이는 수조 방식과는 차이가 나는 셈이 되는데, 그것의 가장 큰 차이는 결당 수조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방식이며 수조량이 일정하지 않아 재정 운영상의 곤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이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이러한 방식은 수조의 불안정성과 수취체제의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⁶⁶⁾ 따라서 아마도 당시 전반적인 생산 수준에 상응하여 1/10 정도되는 정액 수조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만약 당시의 생산 수준이 결당 10석 정도라고

64) 원래의 頃과 結은 절대 면적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경의 면적과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는 결의 면적은 차이가 난다는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지만, 頃이 우리의 史書 등에서 結과 함께 등장할 때 경과 결은 상호 치환되어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도 1頃 당 6석을 내었다는 것이 정도 수세를 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그리 과중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하는 頃은 結과 동일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65) 김기홍 「토지제도의 정비와 조세제도」 『한국사』9 (국편위, 1998) 165~169쪽.

66) 당시의 농업 수준에서 전품의 구분은 세역의 빈도에 따라 구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만 구체적으로 상중하의 구분으로 이루어졌을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세역의 빈도에 따라 생산성의 차이가 비슷하다면 起耕과 歲易의 빈도에 따라 정액 수세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

한다면, 결당 1석 정도의 수조액이 책정되었을 것이다.⁶⁷⁾

통일신라에서는 租와 함께 調의 수취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라의 調는 이미 『隋書』 고려전의 고구려 수조 규정에 서도 알 수 있듯이, 인두세적 의미의 布를 징수하는 방식을 일정하게 계승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통일기에 들어와서는 단순한 인두세적 수세보다는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호의 경제적 규모를 반영한 9등호제에 기초하여 산정된 計烟에 따라 각 촌락 단위로 전체적인 調가 부과되면, 각 공연의 호등에 따른 調의 수취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각 공연은 각각 기본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취의 차별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신라 호등제의 기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⁶⁸⁾ 그러나 대체적인 견해는 토지소유규모가 호등 구분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보는 편이다. 신라사회에서 토지가 그만큼 중요한 재산의 항목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공연의 기본수도 이에 기초하여 정해졌다. 그러나 신라촌락문서에는 토지 외에도 人丁數를 비롯하여 우마수 및 수목(뽕나무, 잣나무, 호도나무)의 수를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각 개별호는 이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은 신라 사회에서 각 공연의 주요한 재산 항목으로서 국가의 파악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들을 호등의 산정에 반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했을 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호등은 호의 경제적 차별성을 반영한 호의 등급인 만큼 소유 토지와 토지를 경작할 노동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농업경영규모가 호등 산정의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파악한다면,⁶⁹⁾ 농업경영규모에 따라 부의 차별화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공연의 기타 재

67) 신라 좌과리가반문서에서 보듯이 1石=20斗의 大斗制가 일반적으로 시행이 되었다면, 결당 20두 정도의 정액수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68) 金琪燮 「통일신라 孔烟과 戶等制 연구에 관한 비판적 검토」 『역사와 경계』 46, 2003.3

69) 金琪燮 「新羅 統一期의 戶等制와 孔烟」 『釜大史學』 17, 1993

산을 구체적으로 호등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차별화된 調의 수취가 가능했을 것이다. 한편 수목으로부터도 현물 수취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특히 뽕나무는 양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수목으로써 양잠을 통하여 명주실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수조하기도 하였을 것이다.

통일신라의 역역 수취는 삼국시기의 방식을 일정하게 계승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역역의 징발대상은 기본적으로 15세 이상의 정남이었을 것으로 본다.⁷⁰⁾ 신라촌락문서에는 연령에 따른 인구수의 변동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신라에서 인정에 대한 파악을 그만큼 중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역역 및 군역의 징발도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것임을 의미한다.

신라촌락문서에서 주목되는 사실 중의 하나는 B촌(살하지촌)에만 보이는 余子和 法私의 존재이다.⁷¹⁾ 이에 의하면 余子는 호등에 상관없이 1명씩 낸 것으로 보이고, 法私는 하하연에서 1명을 낸 것으로 되어 있다. 여자와 법사는 법당 군단 소속의 병사로서 B촌에서만 징발되고 있는데, 이는 여자와 법사가 촌락별로 윤번제로 징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⁷²⁾ 따라서 B촌은 신라촌락문서가 작성될 당시에 법당군에 소속될 병사를 징발할 차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B촌에 대해서는 역역이 면제되었을 것인가.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단정할 수는 없다.

나머지 촌락은 일반적으로 인정의 다과에 따라 일정수의 역역을 부과했을 것으로 보이나, 공연별로 균일한 부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⁷³⁾ 연령별 과액은 촌락에 대한 총체적 지배

70) 김기홍, 앞의 책(1991) 187~190쪽.

71) 「合孔烟十五 計烟四余分三 此中仲下烟一余子 下上烟二余子 下仲烟五並余子 下下烟六以余子五法私一」.

72) 김기홍, 앞의 책, 190~191쪽

73) 김기홍, 앞의 책, 190~194쪽. 김기홍의 경우도 통일신라기에 공연별로 균일한 징발 부과가 있었지만, 지방의 잡역 등에는 공연별 또는 자연호별 인정수의 다과에 따른 징발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를 위한 조사의 일환이었지만, 인정에 대한 조사가 국가의 입장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역의 부과는 대체로 농한기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그 시기도 대체로 1개월 정도였을 것으로 본다.

2. 부산지역의 수취체제와 民

6세기 말 단계에 이르면 부산 지역의 각 촌락은 각 지방관을 매개로 하여 신라의 직접적 지배하에 들어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거칠산군에 소속된 현은 大飮縣(동평현)과 甲火良谷縣(기장현)이다.⁷⁴⁾ 거칠산군에 소속된 대증현이나 갑화량곡현은 대증성(촌)이나 갑화량곡성(촌)으로 불리웠을 가능성이 크다. 6세기 말 당시에 거칠산군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대증성(촌)이나 갑화량곡성(촌)은 각 지역의 중심촌으로서 나두나 도사가 파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파견된 지역은 동래 지역과 대증현지역, 갑화량곡현 지역의 중심촌이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각 촌에는 촌주가 존재했을 것이며, 지방관은 촌주를 매개로 하여 각 지역을 관할하였을 것이다. 7세기 말에 이르러 행정 단위로서 군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고, 경덕왕대에는 동래군으로 개칭하기에 이른다. 동래군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군 形勝 조의 표현대로 “땅은 해안가에 있고 대마도와 가장 가깝다”고 하듯이, 해안 방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郡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곳 동래군 태수는 동평현과 기장현을 양 날개로 하여 동남방의 군사적 방어를 주 기능으로 하였을 것이다.

동래군이 있었던 郡의 治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동래현 고적조에 의하면 “해운포에 옛 읍성이 있는데, 동남쪽은 돌로 쌓았고, 서북쪽은 흙으로 쌓았는데 돌

74) 『三國史記』 권34, 지리지1, 東萊郡.

레가 4430자였다”고 하여 해운대쪽에 古邑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현재 수영 서쪽에 있는 釜山 동남쪽 평지에 동서 약 28~29町, 남북 10여 町의 넓이에 성벽은 철거되어 얼마간 그 유지를 남기고 있고, 그 곳에서 채취한 기와편에 「東萊」 혹은 「萊郡」 등의 문자가 들어 있으며, 석부도 1기와 부서진 탑개가 발견되었고, 축성 방법이 신라의 것으로 동평현성과 그 결구 방식이 유사하다는 보고가 있다.⁷⁵⁾ 이러한 보고 등에 기초하여 이곳을 동래군 치소라고 보기도 한다.⁷⁶⁾ 만약 이곳이 동래군의 치소였다면 그 후 현재의 동래읍성 지역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이곳을 중심으로 동평현과 기장현을 통할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곳 서북 일대의 토성은 산세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고, 그 군데군데 비교적 원형을 갖추고 있는 토성의 높이는 4~5m, 폭은 2~3m나 되며, 성의 표면은 小石과 古瓦片을 섞고 흙으로 다져 견고하게 만든 것으로 보아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⁷⁷⁾ 따라서 이 토성을 만들기 위해 동래군 예하의 많은 촌락으로부터 노동력을 동원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당시 신라의 군현제는 전정과 호구의 규모에 상응하여 편제가 되었으며, 동래군에 대한 수취 규모도 이에 기초하여 정해졌을 것이다. 동래군의 예하에는 동평현, 기장현이 있으며 『삼국사기』 지리지나 『고려사』 지리지에는 보이지 않으나, 현의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향촌에는 향·부곡이 설치되었다는 『동국여지승람』 여주목 등신장조의 기사를 고려하면 동래에 속해 있었던 古智道部曲, 調井部曲, 兄邊部曲, 富山部曲, 生川鄉 등이나 기장에 속해 있었던 古村部曲, 結旆部曲, 沙良村部曲, 沙也部曲 등도 통일신라기에는 동래군이나 해당 현에 소속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⁷⁸⁾ 그런데

75) 金義煥 『釜山の 古蹟과 地名』(釜山市, 1974) 61~65쪽 ; 『釜山府史原稿』 권1, 67쪽.

76) 金義煥, 앞의 책, 58~61쪽 ; 이원근 『부산의 역사』(늘함께, 2000) 46~48쪽.

77) 金義煥, 앞의 책, 63쪽.

7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東萊縣 및 機張縣 古跡.

조선전기에 사야부곡이 사야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⁷⁹⁾ 다른 향·부곡들도 현의 규모는 아니지만, ‘村’으로 편제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였음을 알 수 있다.

통일신라기 영현을 거느린 郡의 직할지는 그 영역의 규모가 대략 縣과 비슷했다.⁸⁰⁾ 따라서 동래군은 郡治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는 몇 개의 직속촌이 있었을 것이며, 영현이었던 동평현과 기장현도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것과 같이 몇 개의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동래군에는 태수와 外司正 및 郡吏로 구성된 郡司를 중심으로 군 행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법당군관도 파견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동래군은 良州나 중앙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郡司를 중심으로 군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아래의 직속촌이나 영현의 현령에게 그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령은 군으로부터 하달받은 명령을 縣司를 중심으로 논의하여 촌주를 통해 각 촌락에 전달하였을 것이다. 중앙에 대한 보고체계는 명령과는 반대의 경로를 거쳐 중앙에 전달되었을 것이다.⁸¹⁾ 이러한 명령·보고체계는 조세수취 및 역역 동원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慶尙道地理志』 동래현조에 의하면 동래현은 호수 290戶, 男 1,151口, 女 1,265口의 호구수를 가진 현으로 그 규모가 동평현(108戶, 627口)이나 기장현(174戶, 1,017口)에 비해서 큰 현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當縣 소속의 촌주가 있는 A촌(沙害漸村)은 공연 11, 인구수 147인, 같은 현 소속의 B촌(薩下知村)은 공연 15, 인구수 125인, 소속을 알 수 없는 C촌은 공연 7, 인구수 72인, 서원경의 직속촌이었던 D촌은 공연 10, 인구수 118인으로, 한 촌락 당 인구수는 72~147인에 이르며 대략 100인 내외 정도가 된다. 신라촌락문서상에 나타나는 當縣의 규모

7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3, 機張縣 古跡.

80) 李仁哲 『新羅村落社會史研究』, 87쪽.

81) 李仁哲, 앞의 책, 91~97쪽.

는 이 내용만으로는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략 신라에서는 3~4개 촌에 한 명의 촌주를 두었고, 하나의 현에 3명 정도의 촌주가 있었다면, 하나의 현은 9~10개의 촌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⁸²⁾ 이 견해를 수용한다면 하나의 현은 대략 900~1,000명 내외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신라 동래군은 영현으로서 동평현과 기장현을 제외할 경우 현의 규모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상도지리지』에는 동평현 기장현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동래군의 직속 촌락은 『경상도지리지』에 보이는 동래현의 영역과 대략 일치할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동래군 직속촌의 전체 규모는 동평현과 기장현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동래군의 직속촌이 10개 이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하나의 촌락이 대략 100명 내외의 촌락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경상도지리지』의 인구 규모로 볼 때 24개의 촌락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서 2/3 정도라고 본다면 16개 정도의 촌락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래군은 이들 촌락의 촌주를 통해서 제반 업무를 수행했을 것이다.

동래군의 직속촌의 영역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대략 볼 때 오늘날의 동래구, 금정구,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연제구 등이 해당될 것이다. 동평현은 부산진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사상구, 사하구, 북구 등이, 기장현은 오늘날의 기장군이 각각의 주요 영역에 포함될 것으로 여겨진다.

부여군의 양전대장으로 알려진 ‘所夫里郡田丁柱貼’의 예로 보아,⁸³⁾ 동래군의 양전대장도 각 촌락의 보고를 바탕으로 郡司에서 작성하였을 것이다. 지방관이 파견된 현은 현 단위로 대장이 만들어졌을 것이므로, 동래군은 직속촌을 중심으로 ‘居漆山郡田丁柱貼’ 내지는 ‘東萊郡田丁柱貼’이라는 이름의 토지대장이 만들어졌을 것

82) 李仁哲, 앞의 책, 100~101쪽.

83) 『三國遺事』 권2, 紀異2, 南扶餘.

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영현의 토지까지를 포함하여 동래군 전체의 ‘田丁柱貼’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세종실록지리지』 동래현조에 의하면 동래현의 墾田수는 속현이었던 동평현까지 포함하여 1,723결(수전 5/8)이었다. 동래현 지역의 개간 정도가 얼마나 진행되었을 지는 알 수 없으나 동래현의 촌락수를 16개 정도로 보고, 동평현의 촌락을 6개 정도로 본다면 한 촌락의 토지결수는 약 78결 정도가 된다. 이를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각 촌락의 토지 결수 106~177결인 것과 비교하면 동래 지역의 토지는 상대적으로 좁은 것이었다. 또한 『세종실록지리지』 당시의 동래현과 동평현의 1인당 평균 토지결수는 0.57결 정도였고, 이를 신라촌락문서의 1인당 평균 토지 결수인 1.2결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½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여말선초를 지나면서 결부제가 변화되었고, 동래 지역의 지역적 특징, 당시의 歲易의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그리 큰 차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동래군의 영현이었던 동평현은 지금의 당감동에 있었다. 동평현의 현 치소는 아마도 1992년도에 발굴된 바 있는 당감동의 동평현성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⁸⁴⁾ 동평현은 현 치소의 縣司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할 지역이 절영도에까지 이르고 있었다.⁸⁵⁾ 따라서 동평현에 소속된 촌락은 여러 개의 자연촌을 포괄하고 있었을 것이다. 『慶尙道地理志』에 의하면 동평현의 호수는 108호 남자 342명, 여자 285명으로 모두 627명이었다. 그렇다면 동평현은 4~6개 정도의 촌락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1~2명의 촌주가

84) 釜山廣域市立博物館 『堂甘洞城址 I』 1996. 발굴조사 보고에 의하면 동평현성은 문헌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동래군의 영현으로서 대증현에서 동평현으로 개칭된 통일신라시기와 그 이전의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려 이전으로 소급하기가 다소 곤란한 점이 있으나, 성벽의 축조기법으로 삼국시대부터 사용되었던 판축 기법을 활용한 점으로 보아 좀더 규명할 여지도 남기고 있다고 여겨진다. 발굴의 결과와 상관없이 신라 경덕왕 이후 동평현은 대증현을 계승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위치도 지금의 동평현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85) 『高麗史』 권57, 지리지2, 梁州 東平縣.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장현은 지금의 기장군 지역에 해당하는데,⁸⁶⁾ 그 현치는 지금 기장읍 교리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기장고읍성으로 추정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3, 고적조에 의하면 “고읍성은 지금 치소의 동북쪽 5리에 있으며, 흙으로 축조하여 둘레가 3208척이다”고 하여 조선시기의 읍치보다 동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토성은 기단석축형 판축토성으로 추정되는데 그 축조시기는 신라시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고려 후기 왜구침입으로 인해 성이 함락되었다가 공양왕 3년(1391)에 다시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⁸⁷⁾ 따라서 통일신라 기장현의 縣治는 바로 고읍성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고읍성에는 아마도 縣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⁸⁸⁾ 縣司는 현령을 중심으로 縣吏와 더불어 현을 다스리는 중심기구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慶尙道地理志』 기장현조에 의하면 기장현의 인구는 호수 174호, 인구수 1017口 가운데 남자 397口, 여자 620口로서 전체 구수 가운데 여자의 비율이 61%에 가깝다. 동래군 52.3%, 동평현 45.4%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여자의 비율이 높다. 기장현은 해안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해안 방어를 위한 男丁의 필요성이 매우 높는데 비하면 여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다소 의문이다. 그 이유를 유추해본다면 고려 후기 왜구의 침입으로 인한 남성의 감소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 비율을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여자의 비율, A촌 55.1%, B촌 62.4%, C촌 44.4%, D촌 56.8%

86) 기장현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金琪燮 「機張郡의 歷史와 文化遺産」 『韓國民族文化』8, (韓國民族文化研究所研究所, 1996); 鄭容淑 「新羅·高麗時代 지방제도의 정비와 機張」 『韓國民族文化』8; 機張郡誌編纂委員會 『機張郡誌(상)』 2001.

87) 機張郡誌編纂委員會 『機張郡誌(상)』 2001, 326~327쪽.

88) 『기장군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토성의 해발 90m 지점에는 약간의 평지가 조성되어 있고, 곳곳에 건물터로 추정되는 초석이 보이고 기와편도 많이 보인다고 한다. 이 건물지의 위치로 보아 이곳이 縣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와 비교해볼 때 반드시 그렇게만 볼 이유는 없다. 신라촌락문서상에는 대체로 여자의 비율이 높으며, B촌의 경우는 기장현의 여자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慶尙道地理志』에 보이는 기장현의 인구 규모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당시의 인구라고 가정할 때 10개 내외의 촌락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며, 2~3명의 촌주가 있었을 것이다. 촌주가 있는 행정촌에 村司가 있었을 것이며, 촌사에서는 촌주를 중심으로 각 촌락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현령은 행정의 가장 기초단위인 각 촌사를 통해 개별촌에 관해 파악했을 것이다.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듯이 모든 촌에 촌주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촌주가 있는 중심촌의 촌사에서 각 촌락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실시했을 것이다.

기장현 소속 a, b, c 촌의 촌주는 각 촌에 대한 孔烟數, 計烟數, 촌의 둘레, 연령별 인구수, 우마수, 수목수 등과 그 변동을 조사하여 소속 현에 보내었을 것이다. 기장현은 그에 기초하여 각 촌락에 대한 수취를 했을 것이며, 수취된 수취물은 縣倉에서 보관되어 일부는 현의 소요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郡을 통해 중앙으로 보내졌을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 기장현조에 의하면 기장현의 전결수는 730결(수전 1/2)이었다. 기장현이 10개 정도의 촌으로 이루어졌다면 1개 촌에 73결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되어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동래현의 1개 촌 78결과 대동소이하며, 1인당 토지는 0.72결로서 동래현 0.57결에 비해 다소 높다. 이는 동래현의 수전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

신라촌락문서상의 각 촌 가운데에서 기장현의 토지규모, 수한전 비율 및 인구수, 남녀 구성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유사한 촌락을 택하여 그 비율에 따라 기장현의 한 촌락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우선 신라촌락문서에서 당현 소속의 촌락으로 가장 일반촌에 가까운 것이 A촌과 B촌이며, 남녀 구성비에

서 기장현(61%)과 가장 가까운 것은 B촌(62.4%)이지만, 수한전 비율에서 기장현(50%)에 비해 B촌은 한전의 비율(66%)이 훨씬 많은 데 비해서, A촌은 한전 비율(40%)이 다소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촌과 B촌의 유사점을 고려하여 기장현의 한 촌락(Sample)을 재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⁸⁹⁾ 이때 인구구성과 호등구성은 B촌에서, 전답구성은 A촌에서 그 비율을 참고하여 구성해보자.

먼저 기장현 S촌의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잡고 B촌의 구성 비율에 상응하여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은 인구 구성비를 가질 수 있다. 丁:丁女=25:36, 助子:助女子=5:3, 追子:追女子=2:11, 小子:小女子=4:8, 除公:除母=0:1, 老公:老母=2:2로 나타난다. 기장현의 전체 호수가 174호인데 10개촌으로 볼 때 평균 17호 정도 되며, B촌은 공연 15이며 중하연 1, 하상연 2, 하중연 5, 하하연 6이다. 이때 신라 촌락문서에서 하하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장현 S촌에 하하연이 2개 더 많다고 보면, 기장현 S촌은 중하연, 1, 하상연2, 하중연 5, 하하연 8이 된다. 따라서 기장현 S촌의 계연수는 4余分4가 된다.

기장현 각 촌의 평균 토지 결수가 73결 정도라고 보면 대략 수한전 각각 36~37결 정도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 촌의 우열이 반영되지 않은 평균토지 결수이며, 기장현 S촌의 공연수도 많기 때문에 신라촌락문서상에 나타나는 A촌의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이를 감안하면서 대략적으로 중하연 14결, 하상연 10결, 하중연 6결, 하하연 2결이라고 보면 기장현 S촌의 전체 결수는 80결이 된다. 우마수와 수목수 등은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생략한다. 이렇게 하여 가상의 기장현 S촌의 대략적 모습을 신라촌락문서의 양식대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⁹⁰⁾

89) 金琪鸞, 앞의 논문(1993) 참고.

90) 이는 만약에 기장현의 신라촌락문서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정도로 표현되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신라촌락문서대로 한다면 촌의 둘레는 ‘步’로 표시해야 하며, ‘三年間中産者’ 수 등의 인구 변동, 그 외 많은 것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을 알 수는 없다.

機張縣S村見內山盖地周三千二百八尺 合孔烟十七 計烟四余分四 此中仲下烟一 下上烟二 下仲烟五 下下烟八 合人九十九 此中古有人三年間中産并合人百 以丁二十五 助子五 追子二 小子四 老公二 丁女三十六 助女子三 追女子十一 小女子八 除母一 老母二

V. 맺음말

1~3세기 부산지역 사회는 거칠산국이라는 소국을 모태로 하여 가야 세력의 일환으로 성장하였으나, 신라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서서히 신라권으로 편입되어 들어가게 되었다. 1~3세기 단계 읍락 내부에는 이미 계층분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읍락 내의 호민과 하호의 존재를 통해 공동체 내부의 지배-피지배 관계의 전형을 확인할 수 있다. 호민·민·하호는 재산 소유 규모의 차이에 의해 차별화되면서 하호는 생산 수단 및 노동 수단 소유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제가, 호민 등에게 종속화된 존재로 역사상에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함께 북속지역의 민들도 지배 집단에 북속됨으로 인하여 지배집단의 읍락내에 존재하는 하호와 아울러 ‘하호’적 존재로 전락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었다.

1~3세기의 수취 방식은 생산력적 한계 조건과 지배체제의 미숙성, 지배-북속으로 인한 상호 관계로 인하여 지배 집단의 무력적 기반을 토대로 가신을 매개로 한 수취와 북속 지역에 대한 공납제적 수취가 지배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취의 기준에 있어서도 토지에 기반한 조세 수취보다는 인신에 기반한 노동력 수취가 중심을 이루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증왕대에 이르러 신라는 州郡制를 시행하면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주군제의 기본단위로서 城·村의 재지세력인 촌주를 매개로 하여 각 지역을 지배하였다. 따라서 이 단계에 이르면 일반민들의 존재는 종래의 하호적 상태로부터 국가의 직접적 지배를 받는 公民으로의 지위 변화가 일어나면서 국가의 파악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따라서 이 단계 일반민은 국가의 수취체계 내에 포섭되어 국가의 조공조를 부담하는 수취 부담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법흥왕대의 율령 반포는 여러 가지의 법적 장치 가운데에서 수취제도의 법제화도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산신성비」에 의하면 군을 단위로 지방민을 역역에 동원하고 행정성·촌에 작업을 분담시켜 축성공사를 마무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행정성촌이 역역 징발의 기초 단위가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6세기 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역역의 수취는 지방조직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신라 중고기 조세 수취와 관련된 중앙 및 지방 제도가 점차 정비되어 가면서, 조세의 수송과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교통로의 개척과 관련한 부서의 정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교통로의 개척은 국가의 명령을 지방에 전달하고 지방 세력을 견제 제압할 수 있는 정치적·군사적 목적 외에 각종 물화의 유통 및 조세의 운송로서 활용되었을 것임은 쉬이 짐작이 된다.

고구려의 수세는 토지보다 인신에 대한 수세의 중요성이 훨씬 높았으며, 인두세적 경향이 강함을 엿볼 수 있다. 『隋書』에서 人에 대한 구체적 수취내용이 나타난다고 해서 『周書』에 나타나는 ‘量貧富差等輸之’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隋書』의 내용은 신라통일기 이후의 수취기준과는 달리 수취의 기준이 인정이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周書』가 표현하고 있는 ‘量貧富差等輸之’의 의미에는 賦稅를 운반해서 납부하는 의미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조세의 운반을 위해서는 일정한 노동력이 필요하며 부유한 호일수록 생산물

을 생산해서 조세를 납부하기까지에 많은 노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정수의 다과는 호의 빈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거칠산국이 사로국에 복속적 지위에 있었을 때 그에 대한 수취 방식은 앞의 부여나 고구려의 예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사로국 내부에서는 6부를 중심으로 내부적 수취 체계가 존재했을 것이며, 거칠산국에 대해서는 공납제적 수취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본다. 이 시기 거칠산국의 민들은 공납제적 수취체제하에서 下戶적 존재로서, 고구려에 복속한 옥저의 민과 같이 사역을 당했을 것이다.

「남산신성비」 단계에 이르면 부산 지역의 각 촌락은 각 지방관을 매개로 하여 신라의 직접적 지배하에 들어갔을 것이다. 거칠산군에 소속된 현은 大飮縣(동평현)과 甲火良谷縣(기장현)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군과 영현이란 중고기 郡내에 존재하던 城과 村이 7세기 말 이후에 그 세력과 규모에 따라 분화 편제된 것이라면, 아마도 대증현이나 갑화량곡현은 대증성(촌)이나 갑화량곡성(촌)으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6세기 말 당시에 거칠산군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거칠산군이 행정단위로서의 역할을 했을 지는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대증성(촌)이나 갑화량곡성(촌)은 각 지역의 중심촌으로서 나두나 도사가 파견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와 함께 각 촌에는 촌주가 존재했을 것이며, 지방관은 촌주를 매개로 하여 각 지역에 대한 조세 수취 및 역역 부과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통일신라의 촌락 지배는 기본적으로 군현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수취체제도 군현제를 바탕으로 재정운영 방식과 연계하여 짜여졌을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의 군현제는 田丁과 戶口의 규모에 따라 정해졌다는 기록은 각 군현에 대한 전정과 호구의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전정과 호구는 수취를 위한 기본 요소이며, 이를 기초로 각 군현

에 대한 수취의 규모도 짐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倉部는 중앙의 재정 기구로서 군현제적 지배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재정 운영의 틀을 만들었을 것이며, 이에 기초하여 調府에서는 구체적인 수취액을 산정하여 9주의 도독에게 보내고, 도독은 다시 태수와 현령 등 지방관을 통하여 각 촌락으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였을 것이다.

신라의 田租는 생산량의 1/10을 거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고려전기에 보이는 수조 방식과는 차이가 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결당 수조액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따라 매우 유동적인 방식으로, 수조량이 일정하지 않아 재정 운영상의 곤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자연 재해의 영향으로 인해 생산이 불안정한 시대일수록 이러한 방식은 수조의 불안정성과 수취체제의 한계로 인하여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전반적인 생산 수준을 고려하여 생산량의 1/10 정도 되는 정액 수조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만약 당시의 생산 수준이 결당 10석 정도라고 한다면, 결당 1석 정도의 수조액이 책정되었을 것이다.

통일신라에서는 租와 함께 調의 수취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신라의 調는 이미 『隋書』 고려전의 고구려 수조 규정과 같이, 인두세적 의미의 布를 징수하는 방식을 일정하게 계승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신라통일기에 들어와서 단순한 인두세적 수세보다는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9등호제에 의해 산정된 計烟에 기초하여 각 촌락 단위로 전체적인 調가 부과되었고, 각 공연의 호등에 따라 調의 수취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각 공연은 각각 기본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수취의 차별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7세기 말에 이르러 행정 단위로서 군의 기능은 더욱 강화되었고, 경덕왕대에는 동래군으로 개칭되기에 이른다. 동래군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군 形勝 조의 표현대로 “땅은 해안가에 있고 대마도와 가장 가깝다”고 하듯이, 해안 방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郡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곳 동래군 태수는 동평

현과 기장현을 양 날개로 하여 동남방의 군사적 방어를 주 기능으로 하였을 것이다.

동래군은 郡治所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는 몇 개의 직속촌이 있었을 것이며, 영현이었던 동평현과 기장현도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것과 같이 몇 개의 촌락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동래군에는 태수와 外司正 및 郡吏로 구성된 郡司를 중심으로 군 행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법당군관도 파견되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동래군은 良州나 중앙기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郡司를 중심으로 군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아래의 직속촌이나 영현의 현령에게 그 명령을 하달한 것으로 여겨진다. 현령은 군으로부터 하달받은 명령을 縣司를 중심으로 논의하여 촌주를 통해 각 촌락에 전달하였을 것이다.

통일신라 동래군은 영현으로서 동평현과 기장현을 제외할 경우 현 정도의 규모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경상도지리지』에는 동평현 기장현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동래군의 직속 촌락은 『경상도지리지』에 보이는 동래현의 영역과 대략 일치할 것으로 보이며, 그럴 경우 동래군 직속촌의 전체 규모는 동평현과 기장현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의 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동래군의 영현이었던 동평현은 지금의 당감동에 있었다. 동평현의 현 치소는 아마도 1992년도에 발굴된 바 있는 당감동의 동평현성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동평현은 현 치소의 縣司를 중심으로 하여 그 관할 지역이 절영도에까지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동평현에 소속된 촌락은 여러 개의 자연촌을 포괄하고 있었을 것이다. 『慶尙道地理志』에 의하면 동평현의 호수는 108호, 남자 342명, 여자 285명으로 모두 627명이었다. 그렇다면 동평현은 4~6개 정도의 촌락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1~2명의 촌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 기장현의 縣治는 바로 고읍성을 중심으로 한 그 일대

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고읍성에는 아마도 縣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縣司는 현령을 중심으로 縣吏와 더불어 현을 다스리는 중심기구의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慶尙道地理志』에 보이는 기장현의 인구 규모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당시의 인구라고 가정할 때 10개 내외의 촌락으로 구성되었으며, 2~3명의 촌주가 있었을 것이다. 촌주가 있는 행정촌에는 村司가 있었을 것이며, 여기서 촌주를 중심으로 각 촌락의 행정 업무를 담당했을 것이다. 현령은 행정의 가장 기초단위인 각 촌사를 통해 개별촌에 관해 파악했을 것이다.